

이사회 규정 (주한화)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이사회的高效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 한)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경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 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독립이사 포함)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 장)

-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 의장이 신병,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인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의장이 정한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종 류)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 ②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한다.
- ③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기타 이사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 한다.

제 7 조 (소집권자)

-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②항에서 규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회 규정 (주한화)

제 8 조 (소집 절차)

-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9 조 (의안 제출)

- ① 이사회 의안과 그 제안 이유는 각 이사 또는 업무집행임원이 작성하여 1주일전까지 이사회 간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간사는 전항의 의안을 접수하면 법적 사항 및 문안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를 이사회에 부의한다.

제 10 조 (결의 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상기 ③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1 조 (부의사항)

-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의 소집

가-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허용

가-3.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

(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의 개최 여부 및 전자주주총회 개최 시

그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나. 재무제표의 승인

다. 영업보고서의 승인

라. 정관의 변경

마. 자본의 감소

바.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사.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이사회 규정 (주한화)

- 자. 주식배당의 결정
- 차.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 카. 이사의 보수
- 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 파. 법정준비금의 감액
- 하.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 가.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가-2. 이사회 의장 선임 및 해임
- 나. 공동대표의 결정
- 다.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 다-2.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 라.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마.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 바.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 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단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 아.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의
- 자.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 차. 임원배상책임보험의 가입
- 카.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 가. 신주의 발행
- 나. 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 다. 준비금의 자본 전입
- 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
- 마.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또는 1,000억원 이상에 상당하는 신규시설투자, 시설증설 또는 별도 공장의 신설
- 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과 이를 위한 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해지
- 사.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타 법인 출자 또는 출자지분의 처분
- 아.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에 상당하는 타인을 위한 신규채무 보증 또는 담보 제공
- 자. 자기자본의 1000분의 25 이상의 채무인수 및 채무변제
- 차. 자산재평가의 실시
- 카. 최근 사업년도 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고정자산 취득 및 처분
- 타. 주권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 파.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증여
- 파-2. 동일단체(개인포함)에 대한 기부금 건당 10억원 또는 당해 사업연도 기부금이 해당 기부금을 포함하여 누계액 10억원 이상의 기부
- 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의 신규 차입

이사회 규정 (주한화)

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의 타인에 대한 금전의 가지급 및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대여

너. 자기주식의 소각

더.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작성 및 승인

러. 기타 재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이사에 관한 사항

가.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나.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다. 이사의 겸업 승인

5. 기 타

가. 중요한 소송의 제기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다.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및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제 12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여진 사항

③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각 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독립이사를 포함 하여야 한다.

1. 감사위원회 :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2.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 : 위원 총수의 과반수

3. 내부거래위원회: 3인 이상의 독립이사가 포함 되어야 하고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

4. ESG위원회 :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5. 보상위원회 :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

⑤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이사회 규정 (주한화)

제 13 조 (위 임)

- ① 이사회는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대표이사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범위 내에서 소관업무 담당이사 등에게 해당 사항의 집행을 대행시킬 수 있다.

제 14 조 (이사 아닌 자의 출석)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 아닌 자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 15 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 16 조 (의사록)

- ① 이사회는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 17 조 (문서의 보존)

이사회 부의안건과 의사록은 간사가 보존한다.

제 18 조 (간사)

- ① 이사회는 1인의 간사와 1인의 보조간사를 두며, 의장이 지명한다.
- ② 간사와 보조간사는 의장의 지시 감독을 받아 이사회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 1 조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규정 (주한화)

제 4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8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 9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10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 11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12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13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 14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단, 이사회 의장의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제 5조 1항” 및 “제 11조 1항 2호가-2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개최되는 제68기 정기주주총회 이후 최초로 소집하는 이사회부터 적용한다.

제 15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사회 규정 (주한화)

제 16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 17 조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2조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제11조 제1항 제1호 가-3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